IBK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5-6236호(2025.09.16) 유효기간(2026.09.10)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설명서

IBK기업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1호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 · 관계법령, 약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소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됩니다.

■ IBK기업은행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 안내

IBK기업은행 사전지정운용방법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기본지표 및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위험도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개별상품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상품입니다.

안정형(초저위험) 포트폴리오는 정기예금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물가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으며, 안정투자형(저위험) 이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상품이 포함되어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도	상품명	운용전략
초저위험	IBK기업은행 안정형 포트폴리오	정기예금 100% 투자
저위험	IBK기업은행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1호	집합투자증권 40%, 정기예금 60% 투자
	IBK기업은행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2호	집합투자증권 40%, 정기예금 60% 투자
중위험	IBK기업은행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1호	집합투자증권 70%, 정기예금 30% 투자
	IBK기업은행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2호	집합투자증권 60%, 정기예금 40% 투자
	IBK기업은행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3호	집합투자증권 80%, 정기예금 20% 투자
고위험	IBK기업은행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1호	집합투자증권 100% 투자
	IBK기업은행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2호	집합투자증권 80%, 정기예금 20% 투자

■ 펀드 위험등급별 디폴트옵션 적용 위험도

펀드 위험등급	6등급 (매우낮은위험)	5등급 (낮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1등급 (매우높은위험)
디폴트옵션 적용 위험도	5등급 (초저위험)	4등급 (저위험)	3등급 (중위험)	2등급 (고위험)		1등급 (초고위험)
포트폴리오 위험도	4.3~5	3.5~4.2	2.7~3.4	1.9~2.6		1~1.8
펀드투자성향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 포트폴리오 위험도 : 개별상품 디폴트옵션 위험도를 편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값
예시) 펀드 위험등급 3등급50%+4등급50% = 디폴트옵션 적용 위험도 2등급*50%+3등급*50%=2.5(고위험)

■ 펀드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투자자산	유의사항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레버리지펀드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펀드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3등급 다소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펀드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ELS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펀드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ELS등)에 투자하는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6등급 매우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펀드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

■ 디폴트옵션 상품을 구성하는 상품 유형

1. **원리금보장상품 :**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
2. **TDF(Target Date Fund)** :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는 집합투자증권
3. **BF(Balenced Fund)** : 투자위험이 서로 다른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상황과 투자한 자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가치상승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
4. **SVF(Stable Value Fund)** :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
5. **SOC펀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증권

■ IBK기업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1호 개요

구 분	내 용
명 칭	**IBK기업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1호** (고용노동부 승인번호 제2022-239호, 승인일자 2022년 12월 20일)
위험도	고위험 (포트폴리오 위험도 2.0)
운용전략	집합투자증권에 100% 투자하는 펀드 포트폴리오로서, 3개의 TDF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수료 및 비용	0.61108% (합성총보수)
적합한 고객투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 IBK기업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1호 상세내용

구 분	상 세 내 용 ('25.1.1. 기준, %)					
구성상품 ①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디폴트옵션 클래스)					
상품유형	집합투자증권(TDF)		편입비중		40%	
펀드 위험등급	3등급		디폴트옵션 위험도		2등급	
과거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설정후 연환산
	1.21	4.04	4.20	17.57	-	13.99
수수료 및 비용	합성총보수	총보수	운용	판매	수탁	기타
	0.8000	0.62	0.38	0.19	0.03	0.02
예금자보호여부	예금보험공사 바로보호	비대상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구성상품 ②	IBK로우코스트TDF2045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디폴트옵션 클래스)					
상품유형	집합투자증권(TDF)		편입비중		40%	
펀드 위험등급	3등급		디폴트옵션 위험도		2등급	
과거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설정후 연환산
	1.94	4.95	7.09	18.38	-	15.35
수수료 및 비용	합성총보수	총보수	운용	판매	수탁	기타
	0.5277	0.3787	0.2	0.1177	0.04	0.021
예금자보호여부	예금보험공사 바로보호	비대상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구성상품 ③	KB온국민TDF203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디폴트옵션 클래스)					
상품유형	집합투자증권(TDF)		편입비중		20%	
펀드 위험등급	3등급		디폴트옵션 위험도		2등급	
과거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설정후 연환산
	0.52	2.34	4.69	12.77	-	12.19
수수료 및 비용	합성총보수	총보수	운용	판매	수탁	기타
	0.4000	0.31	0.135	0.13	0.03	0.015
예금자보호여부	예금보험공사 바로보호	비대상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및 비용 : 집합투자증권의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의 비율로서 펀드 운용에 따른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 구성상품의 상세한 내용은 개별상품의 약관, 상품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특징

1.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입니다.
2.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위험자산한도 규제(70%)가 적용되지 않아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3. 디폴트옵션 상품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용될 경우 가입자가 운용하고 있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가 선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이 향후 퇴직연금사업자(IBK기업은행)의 신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스스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의 변경과 절차

구 분	상 세 내 용
변경사유	•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별 구성상품의 위험등급이 변경되어 디폴트옵션 상품이 승인 당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가입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변경절차	**고용노동부 사전심의** ➡ **고용노동부 변경 승인** ➡ **가입자 대상 변경사실 등 통지**[1] ➡ **변경된 상품으로 적립금 이전운용**[2] 1)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입자에게 통지 2) 변경 승인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기존 가입자의 적립금 이전
유의사항	• 은행은 상품변경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디폴트옵션 상품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 운용합니다. • 가입자는 변경되는 상품으로 운용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받은 이후 또는 변경된 상품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스스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 포트폴리오 주요 위험

1) 투자대상 및 상품 집중 위험

: 특정 지역이나 섹터 및 상품에 대한 편입비중이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해당 지역이나 섹터 및 상품의 성과가 사전지정운용방법 포트폴리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환율변동 위험

: 해외자산에 투자되는 경우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만기불일치 위험

: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일 이전 해지하는 경우 약정금리가 아닌 일반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성향불일치 위험

: 사전지정운용방법 포트폴리오 위험도는 투자자 성향과 같거나 낮지만, 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정방식(편입 금융상품 위험도 가중평균)에 따라 편입되는 일부 상품의 경우 투자자 성향대비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 편입될 수 있습니다.

5) 원금손실 가능성 및 운용결과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

: 사전지정운용방법 상품은 시장상황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구성상품의 주요 위험은 개별상품의 약관, 상품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기존에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입자는 규약에 명시된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미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Q2. 기존 운용하던 상품 만기 도래일에 바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이전되어 운용되는 건가요?

만기 후 **4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이 2주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됩니다. **통지 후 2주가 지났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Q3. 펀드를 가입할 때 부담해야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회사, 운용회사, 수탁회사, 사무관리 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보수, 운용보수 등 기관별 **보수의 경우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시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Q4. 펀드환매 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펀드의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는 '과표기준가격'은 '기준가격'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펀드에 편입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과세대상 소득(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펀드 재투자(결산)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펀드는 설정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투자실적을 확정하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 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 등을 제외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으로 다시 분배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 시 까지 유보 가능) **재투자를 하게 되면 다음날 기준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반대로 세후 이익분배금 만큼 보유좌수가 증가하므로 전체 평가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안내

구 분	내 용
청약철회권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신규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을 통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투자금은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내에 자동 반환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투자자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를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위법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을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수수료(위약금 등) 부과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집합투자증권] 투자자는 당행의 「자료열람요구권 처리기준」에 따라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약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자료열람요구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지 및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은 보관기간 내 열람 가능하며, 보관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보관하고 일부 자료의 경우 5년 보관합니다. [예금성 상품]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법령, 타인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라오며, 상품 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2.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포트폴리오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과거의 운용성과 자료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 당행은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 설명을 충분히 듣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성상품의 상세한 내용은 개별상품의 약관, 상품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직원 확인사항	가입하신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판매직원 : (서명/인)